

2023년 3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 일시·장소 : 2023. 3. 17.(금) 10:00~12:1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 참석 : 13명
 - 위촉 위원(8) : 이영주(위원장), 김근주, 김수정, 김원규, 이승한, 김영희, 임준규, 정흥준
 - 소관 부서(5) : 시민인권보호관(3),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상정안건 : 총 4건

- 의결사항 : 4건(이유없음(기각) 4건)

심의결과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4건	4건	0건	0건
의결사항	4건	4건 (이유없음(기각) 4)	-	-

결과내역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상정결과
의결사항 : 4건(이유없음(기각) 4)				
23-18 (재상정)	23이의-1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2차 피해(22신청-71, 피신청인) 권고 결정 이의	이유없음 (기각)	원안가결
23-19 (재상정)	23이의-2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2차 피해(22신청-71, 신청인) 권고 결정 이의	이유없음 (기각)	원안가결
23-20	23이의-3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22신청-69) 권고 결정 이의	이유없음 (기각)	원안가결
23-21	23이의-4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23신청-3) 기각 결정 이의	이유없음 (기각)	원안가결

□ 의결사항

- [의안 제23-18호(재)]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2차 피해(22신청-71, 피신청인) 권고 결정 이의
 - 23이의-1 (이유없음)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결정과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별개의 내용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20조 제4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차 피해’ 판단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안으로 원결정을 번복할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 이유없음으로 원안 가결함.
- [의안 제23-19호(재)]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2차 피해(22신청-71, 신청인) 권고 결정 이의
 - 23이의-2 (이유없음)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원결정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없이, 피신청인 1에게 공개적인 사과문 게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원결정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2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권고’ 한 것이기에 이의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원결정을 번복할만한 이유가 없어 원안 가결함.
- [의안 제23-20호]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22신청-69) 권고 결정 이의
 - 23이의-3 (이유없음)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당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관련 자료, 추가 참고인들의 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결정을 번복할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 이유없음으로 원안 가결함.
- [의안 제23-21호]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23신청-3) 기각 결정 이의
 - 23이의-4 (이유없음)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당시 상황,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결정을 번복할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 이유없음으로 원안 가결함.